

#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월 17일 김혜경, 변채옥 의원 발의  
(21인 의원 찬성)

나. 회부일자 : 2008년 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3월 14일) 상정
-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3월 14일) 보류
-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5월 20일) 상정
-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5월 20일) 수정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변채옥 의원)

### □ 제안이유

- 기존의 부천시 여성위원회 운영 조례와 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흡수 통합하여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에 여성 관계 법령에 의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시장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나.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정책의 분석·평가하고, 각종 통계와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시민에게 최신의 여성 관련 정보 제공과 매년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조 내지 10조)

- 다.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자문기관의 위촉직 위원정수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고, 공직 및 투자기관에 여성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성차별·성희롱 방지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함(안 제11조 내지 15조)
- 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책을 추진하고, 노인과 결혼이민자 및 장애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영유아 보육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6조 내지 19조)
- 마.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과 단체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한 관련시설의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24조)
- 바. 여성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 내지 36조)
- 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 내지 48조)
- 아.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9조 내지 51조)
- 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천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2조 내지 61조)
- 차.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에게 시상하는 부천시 여성상에 사항을 정함(안 제62조 내지 67조)
- 카. 기타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8조)

## □ 참고자료

### ○ 경기도내 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운영 현황

구분	시군별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일	조례 포함 내용				
			여성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발전 기금	여성발전 위원회	여성상	기타
조례 제정 운영 시군	경기도	2000. 1.10	0	0	0	0	성차별신고센터
	수원	2004. 7.28	X	0	0	0	
	성남	2004. 1.12	0	0	0	0	
	안양	2005. 8. 1	X	0	0	X	
	고양	1999.12.30	X	0	0	X	
	안산	2000. 4. 4	X	0	0	0	성차별신고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시흥	2003. 3.31	X	0	0	X	성차별신고센터 여성단체협의회
	광명	2005. 4.21	X	0	0	X	
	오산	2000.12.23	X	0	0	0	여성종합신고센터
	용인	2001.12.24	X	0	0	X	
	의왕	2002. 5.13	X	0	0	0	성차별신고센터
	김포	2007. 8. 1	X	X	0	X	
	과주	2002. 1.15	X	0	0	0	여성복지상담소
	군포	2006. 4. 5	X	0	0	X	
	포천	2003.10.19	X	0	0	X	여성단체연합회
	과천	2002. 2.26	X	0	0	X	성차별신고센터
	남양주	2002.10. 7	X	0	0	0	남녀차별신고센터
	광주	2006.12. 4	X	0	0	0	여성단체협의회
	안성	2001.12.10	X	0	0	0	성차별신고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이천	2005. 1.11	X	0	0	0	
화성	2001. 3.21	X	0	0	0	여성발전종합센터	
가평	2006. 5. 4	X	X	0	0		
조례 미 제정 운영 시군 (개별 조례)	부천		X	0	0	X	
	의정부		X	0	X	X	
	동두천		X	0	X	0	
	구리		X	0	X	X	
	하남		X	0	X	X	
	여주		X	0	X	0	
	평택		X	0	0	X	
	양주		X	X	X	X	
	양평		X	0	X	X	
연천		X	X	X	X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 조례인데 일부 조문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규정은 제정목적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인 개념을 규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장에서 여성단체협의회 규정의 의미는 무엇이며, 조례로 단체의 지위를 명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여성단체를 포함하는 협의회 필요성에 대해 순수한 의미를 담은 규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천시 문화상에 여성부문을 포함하여 시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상은 문화발전 유공자를, 여성상은 다양한 방면의 여성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호개방 측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위탁 조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꼭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관련 시설 및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규정한 사항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상 대부분의 조문이 ‘하여야 한다’는 강행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심사시 검토해 주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상 여성단체협의회가 기존에 구성된 협의회인가 아니면 새로 구성할 단체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의자가 아니어서 그 취지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음.(가정복지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정책조정회의는 포괄적으로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각각 둘 필요가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봄.(가정복지과장)</li> </ul>

####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부대의견 : 다양한 분야 여성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 1인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규칙으로 정할 것을 권고

#### 6. 소수의견 요지

- 동 조례안 제12조 2항의 소속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직사회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선 현장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남성의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는 규정이라 판단됨.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216호
의결년월일	2008. 5. 23 (제143회)

제안년월일 : 2008. 5. 20.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부천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기본 조례안이므로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여성관련 단체와 시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30%이상이 여성으로 위촉 되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마련하였음.
- 또한, 여성이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시책을 명확히 하고,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정책 조정회의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함.

## 2. 주요골자

- 일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15조,제52조2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되야 할 주요 여성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해 수정함(안 제6조1항3호)
- 위촉직 위원의 30%이상이 여성으로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임의규정을 정해 수정함(안제11조1항)
- 여성의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을 위해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도입·시행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이를 완화함.(안제12조1항)

- 모성보호의 강화를 위해 여성이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이 강구해야 할 시책을 명확히 정해 수정하고, 다른 조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
- 다른 조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
-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해야 할 여성기업의 범위를 부천시 관내 여성기업으로 수정함.(안 제21조2항)
- 여성발전위원회 위촉직 위원중 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수정함.(안 제27조3항)
-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조사·연구·제안 할 경우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제35조2항)
-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축소하고, 부의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중 각 국장을 관련국장으로, 위촉직 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수정함(안 제41조)
- 여성정책조정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1회로 수정함.(안 제44조2항)
- 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9조 내지 제51조)

#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중 “취하여야 한다”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호 “주요여성정책”에 가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원
- 나.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여성장애인 가정 등에 대한 지원
-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
- 마.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 바.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1조제1항중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이 여성으로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시장은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2에 따라 양성 평등임용목표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여성이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1호 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병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 3. 육아휴직제의 정착

####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제1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17조 제2항중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을 “한부모가정, 미혼모, 위기 여성”으로 수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로 수정한다.

제21조를 제20조로 수정하며, 제2항중 “여성기업”을 “시 관내 여성기업”으로 수정한다

제22조를 제21조로, 제23조를 제24조로, 제24조를 제23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26조를 제25조로 수정한다.

제27조를 제26로 수정하고, 제3항중 “가족여성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으로 가족여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로, “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수정한다.

제28조를 제27조로, 제29조를 제28조로, 제30조를 제29조로, 제31조를 제30조로, 제32조를 제31조로, 제33조를 제32조로, 제34조를 제33조로 수정한다.

제35조를 제34조로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제35조로, 제37조를 제36조로, 제38조를 제37조로, 제39조를 제38조로, 제40조를 제39조로 수정한다.

제41조를 제40조로 수정하고, 제1항중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제2항중 “가족여성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3항중 “각 국장”을 “관련국장”으로, “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수정한다.

제42조를 제41조로, 제43조를 제42조로 수정한다.

제44조를 제43조로 수정하고, 제2항중 “연 2회”를 “연 1회”로 수정한다.

제45조를 제44조로, 제46조를 제45조로, 제47조를 제46조, 제48조를 제47조

로 수정한다.

제5장을 삭제한다.

제6장을 제5장으로 수정한다.

제52조를 제48조로 수정하고, 제2항중 “예산외로 처리한다”를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53조를 제49조로, 제54조를 제50조로, 제55조를 제51조로, 제56조를 제52조로, 제57조를 제53조로, 제58조를 제54조로, 제59조를 제55조로, 제60조를 제56조로, 제61조를 제57조로 수정한다.

제7장을 제6장으로 수정한다.

제62조를 제58조로, 제63조를 제59조로, 제64조를 제60조로, 제65조를 제61조로, 제66조를 제62조로, 제67조를 제63조로 수정한다.

제8장을 제7장으로 수정한다.

제68조를 제64조로, 제69조를 제65조로 수정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조례안과 같음.』

##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제4조(시민의 책무) (생략)	제1조(목적) - 제4조(시민의 책무) (제정안과 같음)
제5조(적극적 조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 취할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	제2장 여성정책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정안과 같음)
1 - 2 (생략)	1 - 2 (제정안과 같음)
3. <u>주요여성정책</u>	3. <u>주요여성정책</u> 가. <u>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u> 나. <u>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u> 다. <u>맞벌이 부부, 한부모, 여성장애인 가정 등에 대한 지원</u> 라. <u>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u> 마. <u>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u> 바. <u>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u>
4 (생략)	4 (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 (생략)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 (제정안과 같음)
제8조(통계·자료의 성별 구분) - 제10조(여성주간행사) (생략)	제8조(통계·자료의 성별 구분) - 제10조(여성주간행사) (제정안과 같음)
<p>제11조(시정참여의 확대)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u>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11조(시정참여의 확대) ① - - - - - - - - - - - - - - - 위촉직 위원의 <u>30% 이상이 여성으로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12조(공직 등예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2에 따라 <u>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12조(공직 등예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하기 위하여 <u>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제정안과 같음)</p>
제13조(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생략)	제13조(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제정안과 같음)
<p>제14조(모성보호의 강화) ① <u>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14조(모성보호의 강화) <u>시장은 여성이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li> <li>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li> <li>3. 육아휴직제의 정착</li> <li>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li> </ol>

제 정 안	수 정 안
<p>②시장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5조(양성 평등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u>지원하여야 한다.</u></p>	<p>제15조(양성 평등의식의 제고) - <u>지원할 수 있다.</u></p>
<p>제16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생략)</p>	<p>제16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정안과 같음)</p>
<p>제17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생략) ②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생략)</p>	<p>제17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 - <u>한부모가정, 미혼모, 위기여성</u> - - - - - - - - - - - - - - - ③ (제정안과 같음)</p>
<p>제18조(영유아보육) 시장은 영유아 보호 및 건전한 교육과 방과 후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9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생략)</p>	<p>제18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제정안과 같음)</p>
<p>제20조(국제협력활동의 지원) (생략)</p>	<p>제19조(국제협력활동의 지원) (제정안과 같음)</p>
<p>제21조(경제활동의 지원) ①(생략) ②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u>여성기업이</u>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제20조(경제활동의 지원) ①(제정안과 같음) ② - - - - - - - - - - <u>시 관내에 여성기업이</u> - - - - - - -.</p>
<p>제22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생략)</p>	<p>제21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정안과 같음)</p>
<p>제23조(단체에 대한 지원) (생략)</p>	<p>제22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정안과 같음)</p>
<p>제24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생략)</p>	<p>제2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b>제3장 여성발전위원회</b>	<b>제3장 여성발전위원회</b>
<u>제25조(여성발전위원회)</u> (생략)	<u>제24조(여성발전위원회)</u> (제정안과 같음)
<u>제26조(기능)</u> (생략)	<u>제25조(기능)</u> (제정안과 같음)
<u>제27조(구성)</u>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u>가족여성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여성단체 대표,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 ④ (생략)	<u>제26조(구성)</u>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 - - - - - - <u>당연직 위원으로 가족여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 -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u> - - - - - - - - - - ④ (제정안과 같음)
<u>제28조(임기)</u> (생략)	<u>제27조(임기)</u> (제정안과 같음)
<u>제29조(위원장의 직무)</u> (생략)	<u>제28조(위원장의 직무)</u> (제정안과 같음)
<u>제30조(회의)</u> (생략)	<u>제29조(회의)</u> (제정안과 같음)
<u>제31조(분과위원회)</u> (생략)	<u>제30조(분과위원회)</u> (제정안과 같음)
<u>제32조(위원의 해촉)</u> (생략)	<u>제31조(위원의 해촉)</u> (제정안과 같음)
<u>제33조(간사)</u> (생략)	<u>제32조(간사)</u> (제정안과 같음)
<u>제34조(의견청취)</u> (생략)	<u>제33조(의견청취)</u> (제정안과 같음)
<u>제35조(수당)</u> ① (생략)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제안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제34조(수당)</u> (제정안 제①항과 같음) <u>(삭 제)</u>
<u>제36조(세부사항)</u> (생략)	<u>제35조(세부사항)</u> (제정안과 같음)
<b>제4장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b>	<b>제4장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b>
<u>제37조(여성책임관의 지정)</u> (생략)	<u>제36조(여성책임관의 지정)</u> (제정안과 같음)
<u>제38조(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u> (생략)	<u>제37조(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u>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u>제39조(여성정책조정회의)</u> (생략)	<u>제38조(여성정책조정회의)</u> (제정안과 같음)
<u>제40조(기능)</u> (생략)	<u>제39조(기능)</u> (제정안과 같음)
<u>제41조(조정회의의 구성)</u> ①조정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u>20인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u>가족여성업무 담당국장</u> 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u>각 국장 및 원미구보건소장</u>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u>시의원</u> , 여성정책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u>제40조 (조정회의의 구성)</u> ①- - - - - - - - - - <u>15인 이내</u> 의 - - - - - - - . ②- - - - - <u>위촉직 위원</u> 중 에서 호선한다. ③- - - - - - - - - - <u>관련국장</u> - - - - - - - - <u>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u> - - - - - -
<u>제42조(입기)</u> (생략)	<u>제41조(입기)</u> (제정안과 같음)
<u>제43조(의장의 직무)</u> (생략)	<u>제42조(의장의 직무)</u> (제정안과 같음)
<u>제44조(회의)</u> ①(생략) ②조정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u>연 2회</u>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생략)	<u>제43조(회의)</u> ①(제정안과 같음) ②- - - - - - - - - - <u>연 1회</u> - - - - - - - - - - - - - - - ③(제정안과 같음)
<u>제45조(간사)</u> (생략)	<u>제44조(간사)</u> (제정안과 같음)
<u>제46조(의견청취)</u> (생략)	<u>제45조(의견청취)</u> (제정안과 같음)
<u>제47조(수당)</u> (생략)	<u>제46조(수당)</u> (제정안과 같음)
<u>제48조(세부 사항)</u> (생략)	<u>제47조(세부 사항)</u> (제정안과 같음)
<u>제5장 여성단체협의회</u>	(삭 제)
<u>제49조(여성단체협의회)</u>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단체 활동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삭 제)
<u>제50조(구성 등)</u>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51조(경비 보조 등)</u>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여성발전기금</u></p> <p><u>제52조(기금의 설치)</u>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p> <p><u>제53조(기금의 조성)</u> (생략)</p> <p><u>제54조(기금의 용도)</u> (생략)</p> <p><u>제55조(기금의 관리·운용)</u> (생략)</p> <p><u>제56조(기금관리 심의)</u> (생략)</p> <p><u>제57조(기금관리 공무원)</u> (생략)</p> <p><u>제58조(기금의 운용계획)</u> (생략)</p> <p><u>제59조(지원의 중지 및 회수)</u> (생략)</p> <p><u>제60조(결산보고)</u> (생략)</p> <p><u>제61조(준용)</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부천시 여성상</u></p> <p><u>제62조(부천시 여성상)</u> (생략)</p> <p><u>제63조(시상부문)</u> (생략)</p> <p><u>제64조(수상자)</u> (생략)</p> <p><u>제6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u> (생략)</p> <p><u>제66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u> (생략)</p> <p><u>제67조(세부사항)</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장 보 칙</u></p> <p><u>제68조(사무의 위탁)</u> (생략)</p> <p><u>제69조(시행규칙)</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여성발전기금</u></p> <p><u>제48조(기금의 설치)</u>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p> <p><u>제49조(기금의 조성)</u> (제정안과 같음)</p> <p><u>제50조(기금의 용도)</u> (제정안과 같음)</p> <p><u>제51조(기금의 관리·운용)</u> (제정안과 같음)</p> <p><u>제52조(기금관리 심의)</u> (제정안과 같음)</p> <p><u>제53조(기금관리 공무원)</u> (제정안과 같음)</p> <p><u>제54조(기금의 운용계획)</u> (제정안과 같음)</p> <p><u>제55조(지원의 중지 및 회수)</u> (제정안과 같음)</p> <p><u>제56조(결산보고)</u> (제정안과 같음)</p> <p><u>제57조(준용)</u> (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부천시 여성상</u></p> <p><u>제58조(부천시 여성상)</u> (제정안과 같음)</p> <p><u>제59조(시상부문)</u> (제정안과 같음)</p> <p><u>제60조(수상자)</u> (제정안과 같음)</p> <p><u>제61조(수상 후보자의 추천)</u> (제정안과 같음)</p> <p><u>제62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u> (제정안과 같음)</p> <p><u>제63조(세부사항)</u> (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보 칙</u></p> <p><u>제64조(사무의 위탁)</u> (제정안과 같음)</p> <p><u>제65조(시행규칙)</u> (제정안과 같음)</p>

[수정안 포함]

##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관계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3. “투자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 및 그 밖에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장 여성정책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3. 주요여성정책

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나.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여성장애인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

마.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바.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4.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자료의 성별 구분)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 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참여의 확대)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이 여성으로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직 등에서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① 시장·소속기관의 장·투자기관의 장 및 관내 모든 직장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직장에서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모성보호의 강화) 시장은 여성이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제15조(양성 평등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책 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위기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 결혼 이민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①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협력활동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 확대와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라 시 관내에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부천시 기금운용 계획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24조(여성발전위원회)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 등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부천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의 심의와 부천시 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부천시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여성문제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의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여성상의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심사·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가족여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여성단체 대표,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 검토, 제안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가족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3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여성정책책임관및여성정책조정회의

제36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정책책임관은 여성정책 총괄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과 여성정책 책임담당관(이하 “책임담당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부시장이 되고, 책임담당관은 여성정책 업무추진과 관련이 있는 시의 과·소장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 ① 총괄담당관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 한다.

② 책임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여성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관 사항의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소관 여성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3. 소관 여성정책 업무추진 상황 정리 보고
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소관 부서의 제도개선
5. 영향분석·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6. 그 밖에 총괄담당관이 부여하는 업무

제38조(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또는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총괄담당관 밑에 부천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9조(기능)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또는 점검·평가한다.

1. 연도별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추진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조정회의의 구성) ① 조정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국장 및 원미구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여성정책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1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고, 조정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회의) ① 조정회의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간사) ① 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가족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조정회의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45조(의견청취) 조정회의는 필요한 경우 관계 담당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수당) 조정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세부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48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

금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관련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4.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5.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6.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7.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지원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다.

제52조(기금관리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제26조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5조(지원의 중지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6조(결산보고)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 「부천시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6장 부천시여성상

제58조(부천시 여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격년제로 선발하여 여성상을 시상한다.

제59조(시상부문) 여성상은 다음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
3.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 부문
4. 지역사회발전 등 여성 경영인 부문
5. 효행 부문

제60조(수상자) 여성상 수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선정한다.

제61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62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정한다.

②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3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여성상 수상에 필요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장 보칙

제6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부천시 여성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